

영국 디지털 경제법 (Digital Economy Act 2010)의 주요 내용

I. 입법 배경 및 경과

오늘날의 디지털 통신환경은 분명 이용자들이 하여금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 및 정보를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 요소들이 확산되는 공간인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저작권 침해로 인해, 오늘날의 디지털 통신환경 내의 창작·지식산업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 선진국들은 기존 법률의 재·개정이나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해

현실에 부합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국의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 역시 콘텐츠 서비스 산업의 부흥에 중점을 두는 영국정부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온라인·방송통신부문에 대한 강력한 개입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디지털 경제법의 배경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6년 의회에 보고된 ‘가우어 보고서(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¹⁾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로 영국의 지식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이와 관련된 여론 수렴 및 입법 자문의 과정을 거쳤고, ‘Digital Britain Report’²⁾



1) Gower, Andrew, Gower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London: Majesty's Stationery Office 2006): <http://www.official-documents.gov.uk/document/other/0118404830/0118404830.pdf>.

2) Digital Britain Report는 2009년 12월 최종 업데이트 버전이 완성되었다. 참조: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Culture, Digital Britain: Implementation update (December 2009):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culture.gov.uk/images/publications/DB_Implementationplan_Dec09.pdf.

가 2008년 10월에 착수되어 이듬해인 2009년 6월 의회에 제출되었다. Digital Britain Report는 디지털 경제법의 주요 근간이 된 것으로서, 영국의 디지털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부분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9년 11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은 상원(House of Lords) 개회 연설에서 “영국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통신 환경의 구축, 미래 경제 성장의 지원, 경쟁력 있는 통신 및 공공방송의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³⁾ 개회 후 상원의원 Peter Mandelson이 공식적으로 디지털 경제법을 제안하여, 법률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후 본 법안은 2010년 3월 16일, 하원(House of Commons)에 초안이 제출되었다. 개인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일부 여론의 반발과 영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하원의 3차 토론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한 법안⁴⁾이었음에도, 4월 6일, 당시 여당인 노동당의 지지를 업고 찬성 189표, 반대 47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결국 디지털경제법은 4월 8일,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법률로서 성립되어 공포되었으며, 6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II. Digital Economy Act 2010의 구성 및 주요내용

영국의 2010년 디지털 경제법은 크게 11개 조항(Sections)과 2개의 부칙(Schedul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 제정된 내용 대부분이 기존의 통신법(Communication Act 2003)의 저작권 관련 법률을 강화시키는 후속법령의 성격은 띠지만,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 비디오 녹화법(Video Recordings Act 1984), 공공 대출권리법(Public Lending Right Act 1979), 저작권·의장 및 특허권에 관한 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등의 일부 항목을 디지털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보완 및 삭제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FCOM(Office of Communication : 통신국)의 의무 및 권한

2010년 디지털 경제법이 첫머리에서 규정한 것은 OFCOM의 권한 및 감독 의무 강화이다.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OFCOM의 통신인프라·인터넷 도메인 등록관련 의무와 미디어 콘텐츠 관련 권한 확대 및 보고의 의무로 나



3) Queen's Speech, Column 1 for House of Lords (18 November 2009):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910/ldhansrd/text/91118-0001.htm#09111813000012>.

4) 영국 의회에서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 법안들 중 충분한 법률 검토의 시간이 없을 경우에 여당은 토론·논의절차를 생략하고 하원에서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절차를 Wash up stage라고 한다.

닌다.⁵⁾

(1) OFCOM의 통신 인프라 및 인터넷 도메인 등록 관련 의무(OFCOM Reports on Infrastructure, Internet domain names etc)

본 조항 Section 1은 통신법 Part 2의 Chapter 1 134(A~C)로 추가된다. 주된 골자를 요약하면, OFCOM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및 인터넷 도메인 등록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FCOM은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체적인 사항을 디지털 경제법이 발효된 첫 해와 그 이후 3년에 한 번씩(three-yearly intervals)⁶⁾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 보고하고, 그 보고서는 출판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본법 Section 1: 통신법 134A). 또한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은데, (1) 각 네트워크의 종류, (2) 각 네트워크가 커버하는 지역 및 인구, (3) 각 네트워크의 비가동률(unavailability), (4) 각 네트워크 사이의 공유 정도, (5) 외국 네트워크와 영국 네트워크 사이의 수준 비교(본법 Section 1: 통신법 134B(1)(a~i))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OFCOM은 도메인 등록자·사용자·등록업체에 의해 웹 서비스가 불건전 혹은 불공정하게 운용되는 인터넷 도메인의 구체적인 사항을 국무장관이 요구할 때에 보고 및 관련 사항을 출간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본법 Section 1: 통신법 134C). 다만 OFCOM이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정보의 자유법에 침해된다고 여겨질 경우, 출간할 때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다(본법 Section 1: 통신법 134C(4)).

(2) OFCOM의 미디어 콘텐츠 권한 확대 및 보고의 의무(OFCOM Reports on Media Content)

본법 Section 29와 30은 통신법 264A의 각 항목에 새로 추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OFCOM의 공영서비스 관련 소관(所管: public-service remit) 텔레비전 방송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본법(Section 30: 통신법 264A)은 OFCOM의 공영서비스 소관 업무를 텔레비전 방송뿐 아니라 라디오, 웹기반 스트리밍 서비스(on-demand services) 및 기타 유사 웹사이트를 모두 포함시키고, 적어도 5년에 1회 이상의



5) 원안은 언급한 내용 외에 OFCOM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부분을 초월한 모든 미디어(all media)에 대한 감독 및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었으나, 보수당(Tory)의 강력한 반발로 폐기되었다. 참조 Guardian, "The digital economy bill: what made it," (2010년 4월 8일): <http://www.guardian.co.uk/technology/2010/apr/08/digital-economy-bill>.

6) 원안(Bill)은 2년에 1회 보고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3년에 1회로 수정되어 제정되었다.

해당 방송 및 콘텐츠 부문이 공영서비스 목적에 준하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했다.

본법은 또한 OFCOM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 수집 권한(information-gathering powers)을 통신 제공자 및 정보 제공자(업체)들에게까지 확대했으며, 이를 위의 보고서에 추가시킴을 도록 했다.⁷⁾

2. 인터넷 도메인 등록에 관련 조항(Powers in relation to internet domain registries)

본 조항은 앞서 살펴보았던 OFCOM의 의무 및 권한(본법 Section 1: 통신법 134A~C)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디지털 경제법의 Section 19(통신법 124O로 추가됨)의 주요 내용은 도메인 등록업체 · 사용자 · 도메인 등록자 등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오용 혹은 불공정하게 사용되거나, 등록업체들이 규정에 따라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해당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영국내의 전자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의 명성이나 효율, 그리고 영국 소비자나 공공 멤버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반할 가능성이 있을 때이다.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도적으로 기존 도메인의 유효기간 만기를 기

다렸다가 갱신 전과 같은 이름으로 등록한다거나(drop-catching), 투기를 조장하거나 소비를 부추기는 도메인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미 등록된 도메인이 의도적으로 피싱(phishing), 스팸메일 보내기(spamming), 스파이웨어(spyware) 및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이용자들에게 확산시킨다고 여겨질 때 역시 국무장관의 제재를 받게 했다.⁸⁾

본 법안에 의한 국무장관의 구속력은 오직 영국 도메인(.uk) 등록업체들에게만 있다. 만약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국무장관은 관련 문제를 OFCOM로부터 보고(Report) 받는다. 검토 후 문제의 소지가 인정되면 국무장관은 등록업체에 반드시 그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일정기간 역시 부여하여야 한다(본법 Section 19: 124O).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국무장관은 법률(Section 20 및 21: 통신법 124P와 R)에 의거하여 도메인 등록업체의 관리자를 법정에 고소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업체의 정관(registry's constitution)을 법원이 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무장관은 또한 문제 등록업체의 운영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운영자는 본법(Section 20: 통신법 124Q)에 의거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7) The National Archive, Explanatory Notes for Digital Economy Act 2010(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201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24/notes/division/5/3/2>.

8) 위의 웹페이지 참조.

업체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3. 온라인 저작권 침해: ISP의 공지 시스템과 기술적 제재 & 웹사이트 접근 차단 명령 조항(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 notification system and technical sanctions & Website-blocking injunctions)

(1) ISP의 공지 시스템과 기술적 제재

① 온라인 저작권 침해: ISP의 공지 시스템과 기술적 제재 & 웹사이트 접근 차단 명령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notification system and technical sanctions)

저작권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시 인터넷 서비스업자(ISP)에게 저작권 침해의 증거, 시기와 이용자 주소의 IP 주소 등이 포함된 저작권 침해 보고서(copyright infringement report)를 제출하는 동시에 ISP는 해당 이용자에게 대해 고지(notification)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Section 3: 통신법 124A(2)와 124A(4)). 저작권자는 침해 보고서를 1달 이내로 ISP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ISP도 이용자에게 1달 이내로

저작권 침해 사실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고지해야만 한다(Section 4: 통신법 124A 3(d), 5). ISP는 저작권 침해를 받은 저작권자의 요청 시, 이용자의 반복 침해 행위에 관한 저작권 침해 목록(copyright infringement list)을 추적 및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제공 시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익명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저작권자의 소송⁹⁾을 위해 저작권 침해 목록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가능하다(Section 4: 통신법 124B (1)).

최초 의무(Initial Obligation)의 구체적인 실행은 최초 의무 규범(Initial Obligation Code)에 근거하도록 했다. 이 최초 의무 규정은 산업계의 제안으로 국무장관의 동의를 거쳐 OFCOM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나(Section 5: 통신법 124C (1), (10)), 제안이 없을 시에는 OFCOM이 승인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국무장관의 동의 시 최초 의무 규정을 승인할 새로운 규범(code)을 채택할 수 있다(Section 6: 통신법 124D (1), (8)). 또한 OFCOM은 최초 의무 규



9) The House of Lords, Digital Economy Bill Explanatory Notes(2010년 3월 16일), p.8: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910/embills/089/en/201089-en.pdf>.

본 법안의 해설서(Notes)에 의하면 고지절차와 관련 소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저작권자 인지 후 ISP에 증거 송부 → ISP 인증 후 이용자 계정과 침해연결 → ISP의 이용자에게 대한 고지서한 송부 및 반복침해자료 추적 → 저작권자 요구시 저작권침해 목록(익명) 송부 →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목록 이용 법원에 반복침해자의 개인정보 개시명령 발부 → 저작권자가 침해자에게 직접 최종 고지서한 송부 → 최종 고지서한 무시할 경우 소송: 이영록·이진태, 영국 디지털 경제법상 삼진아웃제도 고찰, 『Copyright Issue Report』 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2010년 4월 28일)4쪽, 주)13 재인용.

정을 관리 및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Section 7: 통신법 124E).

OFCOM은 1년마다 전체 경과보고서와 3개월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국무장관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ISP의 효과적인 의무 행위를 규정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Section 8: 통신법 124F).

② 기술 제재에 관한 조항(Technical sanctions)

정부는 인터넷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기술적 의무(Technical Obligation)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를 ISP에게 부여하도록 한다(Section 9: 통신법 124G). 반복적인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술적 조치는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속도의 제한(sanction speed blocks),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site blocking),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정지(suspends the service provided to a subscriber),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한(other limits against an ISP customer)이다(Section 9: 통신법 124G (3)). 이들 조치 중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의 기술적 조치는 삼진 아웃 제도로 P2P를 통한 파일 공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점에서 사이트 접근 봉쇄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ISP에 대한 기술적 의무 부과 여부 및 의무 준비 절차 이행과 관련한 OFCOM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무장관이 이용자에게 대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ISP에게 명령할 수 있다. 단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Section 10: 통신법 124H (1)). 한편 OFCOM은 국무장관의 명령으로 최초의 의무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고 기술적 의미 실행 필요성을 판단하여 보고해야 하기에 기술적 의무 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 할 수 있다(Section 10: 통신법 124G (1)).

기술적 의무의 구체적 실행 역시 행위 준칙인 기술적 의무 규범(technical obligation code)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기술적 의무는 최초 의무 규범 제정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Section 10: 통신법 124H(2)). 이러한 배경에는 가장 논란이 되었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이용자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기에 알림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존의 저작권의 권리 구제 시스템 역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¹¹⁾

OFCOM은 기술적 의무에 따른 규범 집행,



10) 이영록·이진태, 영국 디지털 경제법상 삼진아웃제도 고찰, 『Copyright Issue Report』 8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2010년 4월 28일), 5쪽

11) Danby, G, Downing, E & Harker R, Digital Economy Bill Research Paper, House of Commons Library (29 March 2010), p. 19 참조: <http://www.parliament.uk/commons/lib/research/rp2010/rp10-030.pdf>.

항소와 비용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채택하여야 한다(Section 11: 통신법 124I, Section 12: 동법 124J).

③ 이용자의 어필 조항(Subscriber appeals)

본 조항 Section 13(통신법 124K)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련되었을 때의 규범(Codes)을 담고 있다. 최초 의무 규범(initial obligation code) 및 기술적 의무 규범(technical obligation code)은 ISP와 저작권자들의 고소 및 이용자가 무죄를 어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된다. 이 준칙에는 또한 ISP와 저작권자가 해당 이용자의 인터넷 계정(Internet account)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해당 이용자는 반드시 자신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어필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이에 대한 배상금이 해당 이용자에게 지급된다.

④ 벌금 및 비용 분담 조항(Penalties and sharing of costs)

본 조항 Section 14(통신법 124L)에 의해 규정된 벌금은 OFCOM이 책정하고 최고 25만

파운드로 한다. 국무장관은 명령(order)에 의해 이 벌금의 액수를 높일 수도 있다. 한편 ISP가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최초의무 및 기술적 의무를 집행할 경우나,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자 사이의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Section 15(통신법 124M)는 이러한 경우에 ISP에 비용 분담 의무를 지웠다. 그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무장관이 명령(order)으로 이들 당사자 사이의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명령은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2) 웹사이트 접근 차단 명령(Website-blocking injunctions provision)¹²⁾

본 조항(Section 17과 18) 역시 법안 제출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많았던 조항이었다. 그 이유는 국무장관이 법원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장소에 인터넷의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는 본법 Section 17(1) 항목 때문이었다. 또한 비록 철회가 되기는 했지만, 본법의 원안의 Section 18은 더 나아가 최고 법원(High Court)으로 하여금 인터넷 공급자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인터넷 접속 위치에 인터넷의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했으며, 특별



12) 접근 차단 가처분이라고도 한다.

한 사정(exceptional circumstance)이 없는 한 인터넷 공급자는 권리를 침해당한 저작권자를 위해 재판비용(court fees)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¹³⁾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법 Section 17은 국무장관이 차단 규정(regulations)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역시 명시했다. (1)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의 이용이 산업계(businesses)나 소비자(consumers)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나, (2)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며, (3) 국가 안보나 범죄 탐지 및 예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Section 17(3)). 이어 Section 17(4~7)은 법무장관이 제정할 인터넷 접근 차단규정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이어 나온 주목할 만한 항목은 앞으로 수립될 이 차단 규정이 1988년에 제정된 저작권·의장 및 특허권에 관한 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을 수정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Section 17(8)).¹⁴⁾

4. 채널 4 조항(Channel 4 Television Corporation)

민영 방송 채널 4에 대한 OFCOM 재정정보서가 2007년 발간된 이래, 채널 4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영방송 모델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¹⁵⁾ 궁극적으로 BBC에 대안(Alternative)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 2009년의 정책보고서 Digital Britain은 채널 4가 BBC에 견줄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채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¹⁶⁾ 아울러 팽창일로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디지털 경제법은 공중파인 채널 4가 미디어 콘텐츠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그에 따른 당국의 감독을 강화시키도록 하였다. 디지털 경제법의 채널4 관련 본 조항(Section 22~23)은 내용별로 통신법 198A~D로 각각 삽입되어 채널 4의 새로운 역할과 의무를 법률로 지정했다.

본 디지털 경제법은 채널 4에게 영화 제작 및



13) 원안 Section 18은 논란 끝에 철회되었고, 대체되어 통과된 새 Section 18의 타이틀은 Section 17의 시행을 위한 '의회의 자문과 조사(Consultation and Parliamentary scrutiny)'로 명명되었다. 국무장관이 Section 17에 의거해 웹사이트 접근 차단에 관한 제재 규정(regulations)을 수립하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의회의 감독 및 법적 인준 절차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Section 18에는 국무장관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제출한 제재 규정(regulations) 원안(draft)은 60일 동안 상·하원에서 엄격한 검증 절차(super-affirmative procedure)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Section 18(3)).

14) 이 밖에 해당 법률 당사자들에 대한 정확한 규정(Section 17(12)과 차단 규정 수립 시 Section 18에서 명시한 의회 인준 절차에 응해야 한다는 것(Section 17(8)) 등이 있다.

15) Legal update, Ofcom statement on implications of Channel 4 financial review for PSB remit: www.practicallaw.com/7-368-1011.

16) 각주 2의 Digital Britain Report 내용 참조.

분배의 권리를 갖도록 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반드시 3가지의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 라인 — (1) 문화관련 재단과 일을 하며(Working with cultural organisations), (2)창조적인 콘텐츠를 창작(Encouraging innovative content)해야 하며, (3) 디지털 포맷 서비스의 증진 — 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뉴스 및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를 위한 콘텐츠도 제작해야 한다는 의무 역시 부과했다(Section 22: 통신법 198A).

한편 채널 4는 반드시 방송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등의 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간 보고서(annual statement of media content policy)를 제출해야 한다(Section 23: 통신법 198B). OFCOM은 또한 채널 4를 평가하고 적절한 방송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Section 23: 통신법 198C).

5. 독립 TV 서비스에 관한 조항(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s)

치열한 공영 방송 플랫폼의 경쟁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라는 환경 속에서 채널 3의 지위는 점차 하락해 왔다. 영국 정부는 본 조항 Section 24~29를 통해 종래의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과 통신법을 개정하여, 궁극적으로 공영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면허 취득 방식에 있어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OFCOM은 채널 3(I TV) 면허 지역(England와 Scotland)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삭제시켜 각 지역에 부합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Section 24: 통신법 216A). 또한 채널 3과 5 면허에 대한 유연한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 텔레텍스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들 채널은 국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면허의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Section 25: 통신법 224(2) 수정 및 224(3)의 삭제).

한편 기존에 OFCOM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 텔레텍스 서비스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만 남겨 놓고 서비스 보호 조항을 삭제시켰다. 이는 다양한 민간 텔레텍스 서비스 업체들에게도 면허 취득의 문호를 개방했음은 물론 고정된 유효기간을 적용시키지 않기로 했다(Section 27: 통신법 218A). 아울러 OFCOM이 가지고 있던 게일어(Gaelic) 규정을 철폐시켜, 스코틀랜드에서 보다 다양한 게일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Section 29: 방송법 184 폐지).

6. 독립 라디오 서비스에 관한 조항 (Independent radio services)

본 조항(Section 30~36)의 주요 내용은, 차후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라디오 서비스 면허(licence)를 변화시킨다는 내용과 OFCOM이 승인한 지역 내에 있는 지방 방송국들의 행정, 경영 관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선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장관은 OFCOM과 BBC의 디지털 전환(Digital switchover) 서비스 제공 시일을 구체적

으로 명기해야 하며, 그 전환 기한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이다. 국무장관이 지정한 날짜에 대해서 OFCOM은 변경 요청이 가능하지만, 라디오 방송 면허 소유권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지정된 디지털 전환 기한에 따라 아날로그 면허를 종결시킨다(본법 Section 30: 방송법 97).

과거 방송법 103A의 의해 12년 동안 갱신되었던 OFCOM의 중앙 및 지방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면허를 7년 더 연장해 준다. 단, OFCOM은 우선 중앙 DAB 서비스(national nomination)에 의해 연장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지역 라디오 콘텐츠(아날로그와 디지털 서비스)가 적어도 80% 이상의 중앙 디지털 사운드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본법 Section 31과 32: 방송법 각각 103A와 104A). OFCOM은 지방 디지털 라디오 면허에 대한 재량권을 보장받아, 보다 지역적 색채가 담긴 콘텐츠 및 질 향상 개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한다(본법 Section 34: 방송법 106(1A) 및 통신법 314 개정).

라디오 방송국(Multiplex) 서비스에 관한 조항으로, OFCOM의 중앙 라디오 멀티플렉스 면허 지역 확장과 지역 라디오 방송국 면허에 대한 지역 및 주파수의 확장·축소 등에 대한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본법 Section 35: 방송법 54A).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 면허 갱신에 관한 규제 조항으로, OFCOM의 디지털 전환 연장기간 및 방송 면허 신청자 자격, 비용 등이 규

정되어 있다. 이 권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행사될 수 있으며, 국회 승인이 요구된다(본법 Section 36: 방송법 Part 2의 Section 58).

7. TV와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규제 조(Regul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services)

이 수정조항은 국무장관의 공공 서비스의 규정 변경에 관한 것으로 OFCOM의 채널 3과 5에 대한 공공 서비스 면허 부담을 지우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국무장관은 이 서비스의 (OF-COM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포함) 면허가 가지는 특정한 의무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 필요시에 재도입을 할 수 있다. 다만 발효 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Section 37 : 통신법 263(4)은 효력 중지).

8. 전자기 스펙트럼 이용 관련 조항 (Access to electromagnetic spectrum)

본 조항(Section 38~39)은 전자기 스펙트럼과 관련해 OFCOM에 추가적인 규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OFCOM의 무선 전신 면허의 구매 및 할당 방식에 관한 규제 조항으로 기존의 무선 전신 면허에 관한 기간 및 구매 방식(auction)과 전자기 스펙트럼 소유자의 소유권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이 새로이 규정되었다(본법 Section 38: 무선 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2006) Section 12와 14).

OFCOM의 전자기 스펙트럼 소유자에 대한 면허 비용 지불에 관한 규제 조항 — 규정을 위반한 스펙트럼 소유자의 금전적 제재 부담, 일

반 멀티플렉스(Multiplex) 면허에 관한 규정과 OFCOM의 통합 기금 (Consolidated Fund) 지 불 등 — 으로 구성되어 있다(본법 Section 39: 무선 전신법 Section 43 및 통신법 Section 400 의 개정).

9. 비디오 녹화에 관한 조항 (Video recordings)

본 조항은 Digital Britain 리포트에서 발표한 정부의 비디오 게임에 대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을 채택에 따른 것으로, 새롭게 강화된 범(凡) 유럽 게임 정보 시스템(Pan-European Game Information system: PEGI)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분류 시스템은 Byron 리포트에서 강조했던 “디지털 환경으로 부터의 아이들을 보호하자(Safer Children in a Digital World)”는 취지에 부합한 것이다.¹⁷⁾ 이 조항의 핵심은 Section 41에 의거하여 비디오 게임(비디오 녹화법 4ZC) 부분을 비디오 제작(동법 4ZB)에서 분리시켰다.

본법 Section 41과 42(비디오 녹화법(1984)의 4ZA에 추가) Section 비디오 게임의 분류와 지정된 권한(Classification of video games and designated authority)이다. 주요 내용은 연령에 따른 법적 분류 조건의 범위를 확장시켜, 오직

12세 이상의 연령에게만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DVD, 영화 및 비디오 게임 등의 콘텐츠는 비디오 녹화에 관한 법률로서 심사되며, 비디오 제작물들은 동법 Section 2의 2(2~3)¹⁸⁾에 의해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심사가 면제된다.

10. 저작권과 저작권자의 관련 벌금 조항 (Copyright and performers' property rights: penalties)

본 조항(Section 42)은 저작권 침해 문서 혹은 불법 녹음(다운로드 포함)에 관한 벌금을 규정하며, 본 조항에 의해 기존의 저작권·의장 및 특허권에 관한 법(1988)의 Section 107(4a), 198(5) 및 198(5A)이 수정되었다.

수정된 법률에 의거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 복역하는 경우 그 기간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연장시키도록 했으며, 한편 동법 위반의 즉결재판일 경우 벌금을 5천 파운드로 규정했다(본법 Section 42: 저작권·의장 및 특허권에 관한 법107(4a)).¹⁹⁾ 또한 불법 녹화제작·배포 및 수입시의 경우 최대 벌금을 5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했다(본법 Section 42: 저작권·의장 및 특허권에 관한 법 198(5a) 및 198(5A)).



17) Legal update, Byron Report on children's safety in digital environment : www.practicallaw.com/9-381-1554.

18) 유해 목록에는 사람 및 동물에 대한 폭력, 범죄 조장, 약물 사용, 음주 및 흡연 조장, 성적(性的) 메시지, 욕설 및 공격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벌금이 1만 파운드이다.

11. 공공 대출권의 권리 (Public Lending Right)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존의 도서·출판 환경 역시 변화를 맞이했다. 현재 활자 이외의 포맷을 가진 도서들이 공공 도서관을 통해 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책’이나 저자와 같은 주요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조항은 관련 법령인 공공 대출 권리법(Public Lending Right Act 1979)의 개념 관련 재개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책’의 정의를 Audio-books 및 e-books로까지 확장시킨 것과 ‘저자’의 정의에 오디오북 제작자와 나레이터까지 포함시켰다. 이 외에 ‘대출(Lent out)’²⁰⁾의 의미 역시 재정의되었는데, 개정된 의미는 도서관으로부터 지정된 시간에 빌리는 것을 뜻하나 온라인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의한 파일 교환은 ‘대출’의 의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본법 Section 43: 공공 대출 권리법 Section 5(2)).

12. 부칙(Schedule)

(1) 부칙 1

본법 Section 41의 부칙인 Schedule 1은 비디오 게임의 등급 심사에 관한 추가조항과 비디오 녹화법 Section 4의 개정 조항 — 비디오 저작물 심사에 따르는 요건 및 비용 등 — 이 포

함되어 있다.

(2) 부칙 2

부칙 2에는 공공 대출 권리법(Public Lending Right Act 1979), 비디오 녹화법(Video Recordings Act 1984),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 및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의 조항 중 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의 목록을 담고 있다.

III. 나가며

본고에서 다룬 영국 디지털 경제법은 크게 두 가지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미디어 부문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침해받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이다. 법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이 본법의 제정을 통해 영국의 정보·통신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본법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을 뿐 아니라 국무장관과 OFCOM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시켰다는 정치권 내의 반발 역시 거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법은 당시 총선의 패배를 눈앞에 둔 노동당 정권은 — 논란의 소지가 컸던 일부 조항



20)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oan 및 borrowed도 lent out과 동일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다.

만 삭제하고 — 하원의 3차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통과시켰다.

영국은 대륙법계 국가와는 달리 명확한 헌법이 부재한 불문법 국가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법률로 제정되어 국왕의 재가를 거쳐 법적 효력이 발생되면, 차후 이 법을 폐지시킬 법적 장치가 부재하게 된다. 지난 총선 이후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자유민주당의 대표 Nick Clegg는 — 현 정부의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 본 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있어,²¹⁾ 정치적 파장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 경제법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본법의 시행으로 그 권한이 강력해진

OFCOM은 디지털 경제법의 저작권 관련 집행 절차의 내용을 담은 최초 의무 규범(Initial Obligation Code)을 2010년 9월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Committee)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1년 1월에 나올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양 건 회

(영국주재 외국법제조사원)



21) Nick Clegg는 총선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법안(디지털 경제법)이 무고한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권리마저 빼앗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Guardian, Repeal the digital economy act - Nick Clegg (2010년 4월 16일).